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7월 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7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7월10일) 상정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7월10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개정이유

- 2003. 5. 1자 표준정원제 시행 및 주민자치과 신설과 인·허가업무의 단일부서 통합 등으로 위임사무 주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재조정 하고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및 먹는물 공동시설관리의 일부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골자

- 총무과 민방위관련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주민자치과로 변경함
(안 별표의1 주민자치과 위임사무명란 제1호,제2호,제3호)
- 기업지원과 소관 고압가스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함(안 별표의1 지역경제과 위임사무명란 제1호,제2호)
- 민원허가과의 환경·위생인허가 관련업무를 환경위생과로 변경함
(안 별표의1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란 제8호에서 제12호까지)
- 민원허가과의 호적과태료에 관한업무를 시민봉사과로 변경함
(안 별표의1 시민봉사과 위임사무명란 제1호)
- 옥외광고물 관한 사항과 먹는물공동시설관리 위임사무를 도로과와 녹지공원과에 각각 신설함(안 별표의1 도로과 위임사무명란 제13호, 녹지과 제3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하여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input type="radio"/> 이번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업무와 위임사무 조정사항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부천시 행정기구개편과 함께 변경되는 사항으로 환경위생과 위임사무 중 일부사무에 대해 수정 의결하기로 함.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제147호
의결 연월일	2003. 7. 15 (제105회)

제안년월일 : 2003년 7월 14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중 신설되는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이 기존 위임사무명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위임사무명을 삭제하고 신설 위임되는 단위사무를 기존 위임사무명의 단위사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

2. 주요골자

- 신설되는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란 제12호 “야생조수보호” 를 삭제
(안 별표의1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 중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란 제12호)
- 삭제되는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란 제12호 “야생조수보호” 의 단위사무를 기존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란 제7호 단위사무란 포함
(안 별표의1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 중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란 제7호 및 제12호)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 중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란 제12호 "야생조수 보호"를 삭제하고, 삭제되는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란 제12호 "야생조수보호"의 단위사무명 "유해조수 구제허가, 포획한 조수의 신고, 박제업 등록"을 기존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 중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란 제7호의 단위사무명란에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환경 위생과	7. 야생 조수 보호	가 야생 조수 보호 단속 및과 태료 부과	·조수보 호 및 수 렵에 관 한 법률 제24조, 제30조	구청장	환경 위생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유해조 수구제 허가 다. 포획한 조수의 신고 라. 박제업 등록	·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0조 · 동법시행 규칙제38조 · 동법제1조 제4항 · 동법제23조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환경 위생과	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식품접 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적용대상〉 단란주점, 유흥 주점	가.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변경신고) 나. 영업자 지위승계	· 식품위생 법제22조 · 동법제25조	구청장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과같음)																					
	〈신설〉	〈신설〉	〈신설〉												9. 공중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 한(단,시장의 권 한 중 적용대상에 열거된 업종에 한 함) 〈적용대상〉 공중위생법 제2 조 제1항제2호 중 다목의 위생 처리업	가. 영업허가 및 신고 나. 영업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 다. 영업승계 라. 영업의 계속등 (휴업, 폐업, 재개업)	· 공중위생 법제4조 · 동법제7조 · 동법제8조 · 동법제10조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10.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다음의 권한중 적용 대상에 열거한 업종에 한함. 〈적용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 제 1 항 제1호 공중위생 영업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공중위생 관리법 제3조 · 동법제3조 의2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11.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변경 신고	·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나. 포획한 조수의 신고 다. 박제업 등록	· 동법제21조 제4항 · 동법제23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수정안 포함]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중 총무과 위임사무명란의 제3호 내지 제5호란을 삭제하고 총무과란 다음에 주민자치과란과 지역경제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주 민 자치과	1.민방위 기술지원대	가.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 3	구청장
	2.민방위대 정기검열	가.민방위대 정기검열(미 위임직장대 및 지역대. 단, 민방위대원 150인 이상 직장대는 제외)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3.민방위 교육훈련	가.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제34조제2항	
지 역 경제과	1.고압가스안전관리	가.고압가스(저장소,판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나.고압가스(저장소,판매사업) 지위승계 다.고압가스(저장소,판매사업) 허가의 취소 라.사업자등과 사용신고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 마.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바.고압가스 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위해방지 조치 명령 사.고압가스 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게 대한 과태료 처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제5항 ·동법제8조 ·동법제9조 ·동법제15조제2항 ·동법제20조 ·동법제24조 ·동법제43조	구청장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지 역 경 제 과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가.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나.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 소설치) 변경허가 다.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지위 승계신고 라.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의 취소 등 마.사업자등과 사용신고자의 안전 관리자(선임, 해임, 퇴직)신고 바.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검사등 사.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사용자 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아.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사용자 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5조 ·동법제3조제5항 ·동법제7조 ·동법제8조 ·동법제14조 ·동법제29조 ·동법제32조 ·동법제48조	구청장

민원허가과의 위임사무명란과 기업지원과의 위임사무명란을 삭제하고 환경위생
과 위임사무명란의 제8호 내지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환 경 위 생 과	7.야생조수보호	가.야생조수보호단속 및 과태료부과 나.유해조수 구제허가 다.포획한 조수의 신고 라.박제업 등록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0조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 ·동법 제21조제4항 ·동법 제23조	구청장
	8.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조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적용대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가.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변경신고) 나.영업자 지위승계	·식품위생법제22조 ·동법제25조	
	9.공중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단,시장의 권한중 적용대상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적용대상>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2호중 다목의 위생처리업	가.영업의 허가 및 신고 나.영업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다.영업승계 라.영업의 계속등(휴업, 폐업, 재개업)	·공중위생법제4조 ·동법제7조 ·동법제8조 ·동법제10조	
	10.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단,시장의 권한중 적용대상에 열거한 업종에 한함) <적용대상>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영업	가.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나.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11.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한함)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도로과 위임사무명란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도로과	13.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사항	가.옥외광고물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공영간판, 에드빌런등의 표시허가에 관한사항 나.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단, 2개구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 제외) 다.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사항 라.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마.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바.과태료의 부과징수 사.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아.가림간판 규격의 결정 자.영업정지 등에 관한사항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3조, 동법 시행령제4조 내지 제7조 ·동법제3조 ·동법제3조 동법시행령제9조 ·동법제13조 ·동법제17조 ·동법제20조 ·동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동법제14조	구청장

녹지공원과 위임사무명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녹지공원과	3.먹는물공동시설관리	가.약수터 유지관리 및 보수	·먹는물관리법제7조	구청장

별표의 2.동위임사항중 민원허가과란의 위임사무명을 삭제하고 세정과관 앞에 시민봉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시 민 봉사과	1.호적과태료에 관한사항	가.호적과태료 부과·징수(단,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출생, 사망 신고를 하는자에 한함.	·호적법 제132조의2	동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주민자치과 관련사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

현					개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총무과	3.민방위 기술 지원대	가.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의3	구청장	총무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4.민방위대 정기 검열	가.민방위대 정기검열 (미 위임직장대 및 지역대. 단, 민방위 대원 150인 이상 직장대는 제외)	· 동법시행령 제22조의3			〈삭 제〉	〈삭 제〉	〈삭 제〉	
	5.민방위 교육 훈련	가.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제34조 제2항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설〉	주 민 자치과	1.민방위 기술 지원대 2.민방위대 정기 검열 3.민방위교육 훈련	가.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가.민방위대 정기검열 (미 위임직장대 및 지역대. 단, 민방위 대원 150인 이상 직장대는 제외) 가.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의3 · 동법시행령 제22조의3 · 동법제34조 제2항	구청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지 역 경 제 과	1.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 고압가스(저장소, 판매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제5항	구청장					
		〈신설〉	〈신설〉				나. 고압가스(저장소, 판매사업) 지위승계	· 동법제8조						
		〈신설〉	〈신설〉				다. 고압가스(저장소, 판매사업)허가의 취소	· 동법제9조						
		〈신설〉	〈신설〉				라. 사업자등과 사용신고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	· 동법제15조제2항						
		〈신설〉	〈신설〉				마.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 동법제20조						
		〈신설〉	〈신설〉				바. 고압가스 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위해방지 조치명령	· 동법제24조						
		〈신설〉	〈신설〉				사. 고압가스 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게 대한 과태료 처분	· 동법43조						
		〈신설〉	〈신설〉				2.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3조, 제5조				
	〈신설〉	〈신설〉	〈신설〉	나.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동법제3조제5항									
		〈신설〉	〈신설〉	다.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지위 승계신고	· 동법제7조									
		〈신설〉	〈신설〉	라.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의 취소등	· 동법제8조									
		〈신설〉	〈신설〉	마. 사업자등과 사용신고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	· 동법제14조									
		〈신설〉	〈신설〉	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검사등	· 동법제29조									
		〈신설〉	〈신설〉	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게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 동법제32조									
		〈신설〉	〈신설〉	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게 대한 과태료 처분	· 동법제48조									

현행					개정안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기관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기관
민원 허가과	1.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 제8조의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적용대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가.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변경신고) 나.영업자 지위승계	· 식품위생법제22조 · 동법제25조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공중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단,시장의 권한중 적용 대상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적용대상> 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2호 중 다목의 위생처리업	가.영업의허가 및 신고 나.영업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 다.영업승계 라.영업의 계속등(휴업, 폐업, 재개업)	· 공중위생법제4조 · 동법제7조 · 동법제8조 · 동법제10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다음 의권한(단,시장의 권한중 적용 대상에 열거한 업종에 한함). <적용대상>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공중위생영업	가.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나.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동법제3조의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 폐기물관리법제24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야생조수보호	가.유해조수 구제허가 나.포획한 조수의 신고 다.박제업등록	· 조수보호및수렵에 관 한법률시행규칙제38조 · 동법제21조제4항 · 동법제23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기관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기관
기업 지원과	1.고압가스 안전관리	가.고압가스(저장소, 판매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나.고압가스(저장소, 판매사업) 지위승계 다.고압가스(저장소, 판매사업)허가의 취소 라.사업자등과 사용신고자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마.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바.고압가스 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위해방지 조치명령 사.고압가스 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게 대한 과태료 처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제5항 · 동법제8조 · 동법제9조 · 동법제15조제2항 · 동법제20조 · 동법제24조 · 동법43조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가.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 나.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다.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지위 승계신고 라.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의 취소등 마.사업자등과 사용신고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 바.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검사등 사.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게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아.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게 대한 과태료 처분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제3조, 제5조 · 동법제3조제5항 · 동법제7조 · 동법제8조 · 동법제14조 · 동법제29조 · 동법제32조 · 동법제48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기관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기관
환경 위생과	7.야생조수보호	가.야생조수보호 단속 및 과태료부과 〈신설〉 〈신설〉 〈신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0조 〈신설〉 〈신설〉	〈신설〉	환경 위생과	7.야생조수보호	가.(현행과 같음) 나.유해조수 구제허가 다.포획한 조수의 신고 라.박제업등록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0조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동법 제21조 제4항 · 동법 제23조	구청장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8.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조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적용대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가.허가(신고)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나.영업자 지위승계	· 식품위생법 제22조 · 동법 제25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9.공중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단,시장의 권한중 적용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적용 대상〉 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2호 중 다목의 위생처리업	가.영업허가 및 신고 나.영업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다.영업승계 라.영업의 계승등(휴업, 폐업, 재개업)	· 공중위생법 제4조 · 동법 제7조 · 동법 제8조 · 동법 제10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0.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단,시장의 권한중 적용 대상에 열거한 업종에 한함). 〈적용 대상〉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영업	가.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나.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신설〉	〈신설〉	〈신설〉			11.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도로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도로과	13.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옥외광고물중 가로현간판, 세로 현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에드 별문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구청장					
			〈신설〉				나.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수리에 관한사항(단, 2개구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 제외)	· 동법 제3조 ·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신설〉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사항	· 동법 제3조 · 동법시행령 제9조						
			〈신설〉				라.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의 취소	· 동법 제13조,						
			〈신설〉				마.허가·신고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동법 제17조						
			〈신설〉				바.과태료의 부과징수	· 동법 제20조						
			〈신설〉				사.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동법 제10조						
			〈신설〉				아.가림간판 규격의 결정	· 동법시행령제19조, 제20조						
			〈신설〉				자.영업정지 등에 관한사항	· 동법 제14조						
			녹지 공원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녹지 공원과	3.먹는물공동 시설관리	가.약수터유지관리 및 보수

○ 동 위임사항

현					개				
행					정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민 위 허가과	1.호적과태료에 관한사항	가.호적과태료 부과· 징수(다만,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출생, 사망신고를 하는자에 한함	· 호적법 제132조의2	동 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시 민 봉사과	1.호적과태료에 관한사항	가.호적과태료 부과·징 수(다만, 거주지 동사 무소에서 출생, 사망 신고를 하는자에 한함	· 호적법 제132조의2	동 장